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정준칙 도입〉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04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정준칙 도입(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0.

다. 회 부 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정준칙 도입(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u>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 의무 (§86의2)</u>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또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기준의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1.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GDP 3% 이내가 되도록 함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수지 2. [채무준칙] 국가채무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GDP 60% 이내가 되도록 함 3. [적자성채무 비중] 적자성채무**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가채무의 60% 이내가 되도록 함 ** 적자성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신설>	○ <u>재정준칙 미준수에 따른 국회 보고 (§86의3)</u> - 정부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국회는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가 미흡·부족한 경우 정부에 수정·재작성 요구 가능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총괄적 검토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정부로 하여금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¹⁾, 예산총칙에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규정하도록 하여 국가채무의 총량을

1)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 등에 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³⁾,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후 남은 세계잉여금은 30% 이상을 국가채무 등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⁴⁾.

한편, 현행법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발행·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채무 현황 및 중기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
- 2)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 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4)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5)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국가채무 관리 및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관리체계 하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⁶⁾)의 GDP 대비 비율은 52.5%로, 미국(120.8%), 영국(101.2%), 독일(63.9%) 및 선진국 평균(108.5%)보다 낮은 수준임⁷⁾.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시행에 따라 본예산은 2020년 512조, 2021년 558조, 2022년 608조, 2023년 639조, 2024년 657조원이 편성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 2022년 및 2025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음.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고, 2017년 $\Delta 1.0\%$, 2018년 $\Delta 0.5\%$ 수준이었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2023년 $\Delta 3.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⁸⁾ 또한 2019년까지 40% 미만 수준에서 관리되던 것이 2025년에는 49.1%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 정부부채의 범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를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및 OECD 등에서 정부부채를 국제 비교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D2)의 개념을 사용함

7) 국가부채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최신의 통계로 2025년 4월 IMF Fiscal Monitor에서 발표함

8) 여기에서 쓰이는 국가채무 비율은 앞서 살펴본 D1, D2, D3 중 D1의 개념임.

[국가채무 등(D1, D2, D3)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2015	591.5	34.0	676.2	38.8	1,003.5	57.6
2016	626.9	34.2	717.5	39.1	1,036.6	56.5
2017	660.2	34.1	735.2	38.0	1,044.6	54.0
2018	680.5	33.9	759.7	37.9	1,078.0	53.7
2019	723.2	35.4	810.7	39.7	1,132.6	55.5
2020	846.6	41.1	945.1	45.9	1,280.0	62.2
2021	970.7	43.7	1,066.2	48.0	1,427.3	64.2
2022	1,067.4	45.9	1,157.2	49.8	1,588.7	68.4
2023	1,126.8	46.9	1,217.3	50.5	1,673.3	69.5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관리재정수지 비율	△0.5	△2.7	△5.4	△4.1	△5.0	△3.6	△4.1	△4.2
통합재정수지 비율	1.6	△0.6	△3.5	△1.4	△2.8	△1.5	△1.7	△2.3
국가채무비율	33.9	35.4	41.1	43.7	45.9	46.8	46.0	49.1

* 제2차 추경 기준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자료 :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되어 참고자료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을 뿐이며, 다른 규정들도 엄격한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지니지 않고 별다른 이행 강제 수단이나 제재 수단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준칙이란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⁹⁾ 있는 수량의 제한’을 의미하는데, 목표지표에 따라 채무준칙·수지준칙·지출준칙·수입준칙¹⁰⁾으로 분류됨.

개정안은 이 중 채무준칙(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과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을 일정 수준(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하고자 함.

한편,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제·개정안¹¹⁾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9) IMF(2017) : “재정목표가 법제화된 경우뿐 아니라 법령 형태가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이행이 의무화되었으면 재정준칙으로 간주”

10) <재정준칙의 분류>

유 형	주요내용	주요 운용국
채무준칙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한도를 제시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약조건을 가하는 방식	영국, 호주, 핀란드
수지준칙	매 회계연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출준칙	총지출 한도,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지출 규모나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미국, 스웨덴
수입준칙	재정수입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설정하거나, 특정 수입에 대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프랑스, 네덜란드

11) 의안번호 제2200529호(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제2200829호(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2202844호(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재정준칙 관련 제·개정안 비교]

구 분	송언석의원안 (재정건전화법안)	박덕흠·박대출의원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60% 이하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단,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적자성채무 비율	-		60% 이하
준칙적용 예외	-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재정여건에 중대한 변화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것 외에는 추경 편성요건과 동일		-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조치	-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포함 -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 가채무 상환에 사용	-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 (박덕흠·박대출의원안) -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 잉여금의 전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 (박대출의원안)	-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재정준칙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 제출 (국회는 이행계획서의 수정·재작성 요청 가능)

재정준칙을 법령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규율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재정준칙의 준수를 법정 의무화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¹²⁾.

둘째,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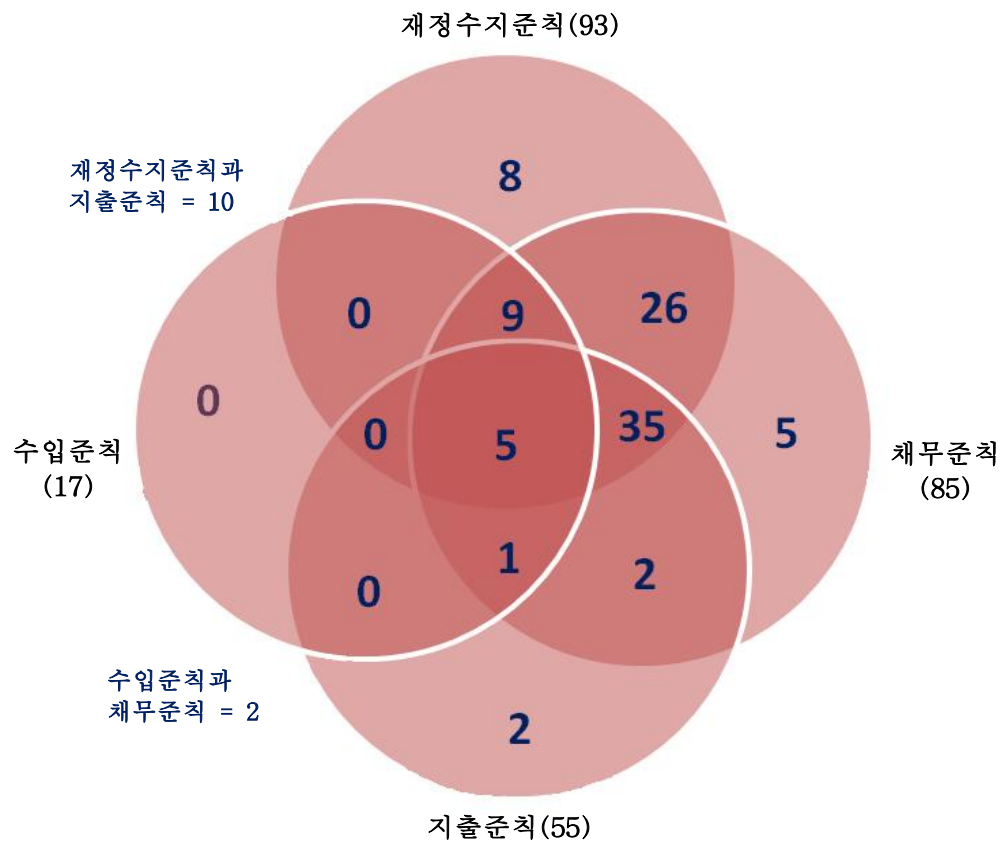
IMF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최소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채택한 국가가 약 105개국에 달하며¹³⁾ 수지준칙(93개국)과 채무준칙(85개국)을 보편적으로 활용 중임.

12)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의 재정준칙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실시함에 따라 2025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4.1%에 달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2025년 8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유로 규모의 적자 감축안을 제시하였음.

(“프랑스, 재정위기 심각...총리가 ‘IMF 구제금융’ 거론할 정도”, 매경이코노미, 2025.8.28.)

13) IMF,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2022. 1., p. 6.

[재정준칙 도입의 보편화(2021년 말 기준)]



자료 : IMF Fiscal Rules Dataset: 1985 - 2021; Davoodi, Elger, Fotiou, Garcia-Macia, Lagerborg, Lam and Pillai (2022a).

특히 2000년대 말 이후로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도 재정준칙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¹⁴⁾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준칙 도입 경험 없음.

14) IMF,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2022. 1., p. 6.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

구 분	준칙내용	도입시기	법적기반
EU	▪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유지 ▪ GDP 대비 부채비율 60% 이내 유지	1992년	안전성협약
	▪ 일부 회원국 대상 지출준칙* 적용 및 재정준칙 적용 완화 * 재정적자 △3% 미만 달성·유지 등	2012년	新재정협약
미국	▪ 재량지출 상한 설정 ▪ 의무지출·세입감소 입법시 PAYGO 원칙	1990년	법률
	▪ PAYGO 원칙 재도입 ▪ 법률에 의해 채무한도 통제	2010년	법률
영국	▪ 자본지출에 한하여 차입 허용 (Golden rule) ▪ 공공부문 순채무 안정적 수준(40%) 유지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적용중단	1998년	내부규칙
	▪ 5년 중기계획의 5년차에 순차입 △3% 이내 ▪ 5년 중기계획의 5년차까지 순채무 비율 감소	2022년	법률
독일	▪ 원칙적으로 수입과 지출 균형 (신규 채무규모 GDP 대비 0.35% 이내 제한) * 연방정부 2016년, 지방정부 2020년부터 적용	2009년	기본법 (헌법)
스웨덴	▪ 총지출 및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1997년	중기계획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1% 흑자 * 재정위원회 설치	2007년	법률
일본	▪ 경상지출의 국내 수입 초과 금지¹⁵⁾ ▪ 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¹⁶⁾	1947년 1998년	법률
	▪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 목표 등	2006년	중기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또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국가별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 IMF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한 국가는 190개 회원국 중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0여 개국에서 재정준칙이 재정책임이나 예산체계 관련 법률(아르메니아, 자메이카, 파라과이) 혹은 헌법을 통해(브라질, 덴마크) 규정돼 있고, 홍근석·김성찬

15) 1975년부터 정부는 동 준칙의 적용 배제 요청

16)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1년여 만에 폐지

(2017)에 따르면 각국의 종류별 재정준칙 159개 중 103개가 성문화된 법률의 형태이며 법률보다 강화된 형태인 헌법에 규정된 재정준칙도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국가의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구 분	지출준칙	수입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계
헌법	4	1	11	3	19
국제조약	0	0	0	0	0
법률	29	2	52	32	115
연정합의	4	2	4	4	14
정치적 협약	5	4	6	8	23
계	42	9	73	47	

자료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22.1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음.

IMF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발동하거나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각자의 재정준칙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¹⁷⁾¹⁸⁾.

둘째, 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 AI를 비롯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IMF,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2022.1, p. 13.

18)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 등을 중단했던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재개하였음.

국 가	경 과
EU	▶ '20.3월 재정준칙 일반면제조항 적용 ▶ '23년 말 면제조항 적용 중단 결정
영국	▶ '20.3월 재정준칙 면제 ▶ '22, '23년 두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재도입
독일	▶ '20~'22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준칙 면제, '23년 러-우 전쟁, 에너지 가격 위기 등 이유로 면제 ▶ '24년부터 준칙 재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나. 재정준칙 도입 관련 논의경과

그동안 법률에 재정준칙을 규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되어 왔는데, 한 가지는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안과 같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식임.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그 방식 및 수준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하나, 다만 「재정건전화법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담겨 있지 않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함.

재정준칙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안」 3건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각각 제출·발의되었으나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및 그 수준과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0대 국회 심사경과]

안건명	대표발의	재정준칙 내용	심사경과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974)	정부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3%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17.1.16.)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7.1.17.) ○ 임기만료 폐기(2020.5.29.)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4378)	송영길 의원	신규 국가채무 전년도 GDP의 0.35% 이내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17.1.16.)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7.1.17.) ○ 임기만료 폐기(202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88)	백재현 의원	국채 발행 및 차입금 순증 규모 GDP 0.35% 이내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2017.11.10.) ○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9.11.21.) ○ 임기만료 폐기(202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426)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2%	○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18.9.19.) ○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9.11.21.) ○ 임기만료 폐기(2020.5.29.)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0593)	송언석 의원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2%	○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019.7.12.) ○ 임기만료 폐기(202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3260)	박명재 의원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	○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11.12.) ○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9.11.21.) ○ 임기만료 폐기(2020.5.29.)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안」 2건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각각 발의·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공청회를 거친 바 있으나, 재정준칙 도입의 시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안건명	대표 발의	재정준칙 내용	심사경과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96)	류성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2%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상정(2020.9.21.)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0.11.11.)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0.11.16.) ○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11.23.)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1270)	송언석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9)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94)	윤희숙 의원	균형재정 원칙 (단 국가채무비율 0.5% 허용)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상정(2020.9.21.) ○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1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025)	정부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 기준을 상호 보완 적용 <계산식> $\left(\frac{\text{국가채무 비율}}{60\%}\right) \times \left(\frac{\text{통합재정수지 비율}}{\Delta 3\%}\right) \leq 1.0$	○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21.2.16.) ○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1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28)	박대출 의원	관리재정수지 △3%, 다만, 국가채무비율 60%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2%	○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상정(2022.12.1.) ○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2.15.) ○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3.15.) ○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6.27.)

다. 조문별 검토

(1)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의 도입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또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채무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과 수지준칙(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이하)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이와 같은 기준은 해외 상당수의 국가가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수준으로,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3% 수준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국가채무준칙 적용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상한 기준]

기준	국가명
80%	모리셔스
70%	카메룬, 세네갈, 말리
60%	EU 회원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55%	슬로바키아
50%	헝가리
45%	세르비아
40%	탄자니아, 안도라, 몽골
35%	나미비아

자료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 2022.1.

[재정수지준칙 적용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상한 기준]

기준	국가명
△3.5%	몰디브, 그레나다
△3%	EU 회원국, 세네갈, 인도, 인도네시아
△2%	코소보, 몽골
△1%	페루, 칠레
△0.5%	그리스, 벨기에, 라트비아
△0.35%	독일
0%	스위스, 홍콩
1%	호주, 스웨덴

자료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 2022.1.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법률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준칙 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두 개정안이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복지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흑자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부채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국가채무인 D1¹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해외 상당수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기준인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의 채무준칙 60%는 D1 기준이 아닌 D2²⁰⁾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채무의 국제적 기준은 IMF와 OECD에서 규정한 D2 기준인데, 현행 법률 및 개정안과 같이 D1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계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의 채무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1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채무

20)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

있음. 실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D1 비율은 45.9%인데 반해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산한 D2 비율은 49.8%임²¹⁾.

다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예산이 현금주의로 편성되므로 발생주의 기준인 D2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D2에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데 해당 기관들에 정부를 구속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²²⁾.

둘째, 개정안의 재정준칙 기준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수준의 기준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과거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2019년 이전에는 대부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2020~2024년은 재정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5년의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비율 $\Delta 4.2\%$ 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됨.

21)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기준 68.4%임.

22) 참고로 지난 제21대국회 재정준칙 관련 법안 심사시에도 정부부채의 범위를 D1으로 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의견을 고려하여 D1을 기준으로 하는 안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였음.

[연도별 재정준칙 한도 준수여부]

	'11	'12	'13	'14	'15	'16	'17	'18
D1 비율(GDP%)	29.0	29.5	31.2	32.5	34.0	34.2	34.1	33.9
전년대비증가율(%)		0.5	1.7	1.3	1.5	0.2	△0.1	△0.2
D2 비율(GDP%)	31.7	33.5	36.0	37.9	38.8	39.1	38.0	37.9
관리수지(GDP%)	△0.9	△1.2	△1.3	△1.8	△2.2	△1.2	△1.0	△0.5
준칙준수여부	○	○	○	○	○	○	○	○
	'19	'20	'21	'22	'23	'24	'25(2차추경)	
D1 비율(GDP%)	35.4	41.1	43.7	45.9	46.8	46.0	49.1	
전년대비증가율(%)	1.5	5.7	2.6	2.2	0.8	△0.8	3.1	
D2 비율(GDP%)	39.7	45.9	48.0	49.8	50.5			
관리수지(GDP%)	△2.7	△5.4	△4.1	△5.0	△3.6	△4.1	△4.2	
준칙준수여부	○	X	X	X	X	X	X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 2024년 D2, D3 비율은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024년 12월)

개정안은 재정준칙 수준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비율 △3%로 설정했으나,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 공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GDP 성장률(경상)은 약 4%²³⁾임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수렴시킬 수 있는 재정수지비율은 △3%가 아닌 △2.3%인 것으로 분석됨.

경상성장률이 4%임에도 개정안에 따라 재정수지비율을 △3%로 유지할 경우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은 78%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재정준칙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2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
경상GDP 성장률	4.3	6.2	5.3	5.5	3.8	1.7	0.9	7.9	4.6	3.3	4.3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 공식]

$$\text{국가채무비율} = \text{재정적자비율} \times \frac{1 + \text{경상성장률}}{\text{경상성장률}}$$

재정수지비율 경상성장률	△2%	△2.5%	△3%
2.0%	102.0%	127.5%	153.0%
2.5%	82.0%	102.5%	123.0%
3.0%	68.7%	85.8%	103.0%
3.6%	57.6%	71.9%	86.3%
4.0%	52.0%	65.0%	78.0%
5.0%	42.0%	52.5%	63.0%

-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관련 → 경상성장률 5%일 때 국가채무비율 60% 유지 위한 재정수지는 약 △3%

$$\text{국가채무비율}(60\%) \times \frac{\text{경상성장률}(5\%)}{1+\text{경상성장률}(5\%)} = 60\% \times \frac{0.05}{1.05} \approx 3\%$$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 적자성 채무 비중에 관한 준칙 도입

개정안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에 더하여,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을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국가채무를 상환재원(대응자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하고 있음²⁴).

금융성 채무란 외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정부는 금융성 채무를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 기타 금융성 채무 및 공자기금 여유재원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반면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등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임.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 참고 〉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대표적
 -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강화
-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
 -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며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 강화

자료 :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p.176

적자성 채무의 경우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상환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그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24)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p.176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의에 따라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정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계획²⁵⁾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²⁶⁾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준칙 준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법률에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대응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에 대략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²⁷⁾.

또한, 현재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어 있는 채무 중 ① 기타 금융성 채무의 경우 상당수가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여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기 어렵고²⁸⁾, ②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의 경우 청약저축

25)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7) 기획재정부는 대응자산이 IMF의 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을 준용하고 있으며, 현금·예금, 융자금 등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8) 2023년 기준 기타 금융성 채무를 구성하고 있는 25개 채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11개 기금·특별회계의 경우 2021년~2023년 지속적으로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부족한 상황임

납입액도 대응자산에 포함되어 대응자산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으며,
③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경우에도 실제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외환보유고 등이 대응자산에 포함되어 있음²⁹⁾.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를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구성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사항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따라서 적자성 채무 비율에 대한 준칙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에 대한 재분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른 준칙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20년
60.6%, 2021년 61.6%, 2022년 63.3%, 2023년 64.5%, 2024년 69.4%,
2025년(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71.0%로, 개정안에 따른 준칙을 준수
하지 못하는 상황임.

29)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5.8., p.53-64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채무	846.6	970.7	1,067.4	1,126.8	1,175.0	1,301.9
적자성 채무	512.7	597.5	676.0	726.4	815.2	924.8
금융성 채무	333.9	373.2	391.3	400.3	359.8	377.1
적자성 채무 비중	60.6	61.6	63.3	64.5	69.4	71.0

* 제2차 추경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어 있는 채무 상당수가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그 정의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할 경우 적자성 채무 비중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국가채무의 특성상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에 차이가 없어 적자성 채무만 별도로 관리할 실익이 낮고,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 비중은 71.0%로 이미 개정안에 따른 상한(60%)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재정준칙 미준수에 따른 국회 보고

개정안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해당 이행계획서가 미흡하거나 부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이행계획서의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른 재정준칙 관련 제·개정안과 달리 개정안의 경우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음.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정준칙 관련 제·개정안은 모두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둘째, 재정준칙 미이행 시 이행하여야 하는 재정건전화 조치의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재정준칙 미준수 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나 다음연도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재정준칙이 기존의 재량적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재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됨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 미준수 시 국가채무 감축 또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화 조치가 일정 수준 강제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재정준칙 관련 제·개정안의 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를 살펴보면, 송언석의원안은 재정준칙 미준수 시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덕흠의원안은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박대출의원안은 재정건전화대책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에 더해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행계획서의 검토 및 수정·재작성 요구 주체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의미하며, 사회 전반을 규율하여 국회의원 전원이 보고받아야 할 사항을 다룸. 반면 소관 상임위 보고는 특정 영역을 규율하는 사항으로서 정책 특성상 전문성 또는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함³⁰⁾.

30)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724-725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 의무) ① 정부는 국가의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이하 “재정준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목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고용보험기금 나. 국민연금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채무(이하 “국가채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91조제2항 각 호의 금전채무.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채무는 제외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같은 법 제13조제

현행	개정안
<신설>	<u>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u> 3. 적자성채무(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가채무의 100분의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 및 제89조에 따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재정준칙 미준수에 따른 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가 미흡하거나 부

현행	개정안
	<u>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이행계획서의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u>

문의처
02)6788-5160

참고

국가별 주요 재정준칙 운용 사례 [IMF, 2022년]

국가명	주요 준칙 내용	시행시기
〈OECD 회원국〉		
호주	(수지) 예산 흑자 $\geq$ GDP 1% (수입) 세수비율 $\leq$ GDP 23.9%	1998
오스트리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45%	1999
벨기에	(수지) 구조적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0.5% 한도 내에서 설정	2014
칠레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1%	2009
콜롬비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1%	2011
코스타리카	(수지) 신규차입 규모 $\leq$ 공공투자 규모	2001
체코	(채무) 일반정부 채무 $\leq$ GDP 60%	2017
덴마크	(지출) 지출증가율 $\leq$ 잠재GDP성장률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4
에스토니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4
핀란드	(수지) 재정적자 $\leq$ GDP 1%	2011
프랑스	(지출) 지출 증가율 한도(이자·연금지출 제외) (수지) 중기예산법안에 구조적 수지목표 설정	98/12
독일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35%	2009
그리스	(수지) 재정적자 $\leq$ GDP 0.5%	2014
헝가리	(채무) 정부채무 $\leq$ GDP 50%	2016
아이슬란드	(수지) 재정적자 $\leq$ GDP 2.5% (채무) 일반정부 순채무 $\leq$ GDP 30%	2016
아일랜드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2
이스라엘	(지출) 실질지출증가율 $\leq$ 3년평균 인구증가율 + 50/국가채무비율	2014
이탈리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4
일본	(수지)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2018
라트비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채무) 공공채무 $\leq$ GDP 60%	2013
리투아니아	(지출) 예산, 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지출 $\leq$ 잠재GDP성장률의 0.5%	2015
룩셈부르크	(채무) 일반정부채무 $\leq$ GDP 60%	2004
멕시코	(지출) 구조적 경상지출의 실질 증가율 $\leq$ 2%	2014
네덜란드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수준 $\leq$ GDP 1.0%	2011
뉴질랜드	(수지) 채무가 신중한 수준(prudent levels)에 이를 때까지 흑자 운영	1994
노르웨이	(수지) 중앙정부 재정적자(석유 부문 제외) $\leq$ 3%(연금펀드 장기기대수익률)	2017
폴란드	(지출) 재정지출·신규 지출 실질증가율 $\leq$ 1.0% (채무) 일반정부채무 $\leq$ GDP 60%	15/14
포르투갈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leq$ 중기목표(MTO)	2015
슬로바키아	(채무) 공공채무 $\leq$ GDP 55%	2012
슬로베니아	(수지) 구조적재정수지 준칙과 자동시정 메커니즘 채택	2015
스페인	(지출) 명목 지출증가율 $\leq$ 스페인 명목 중기 GDP 성장률(이자지출, 실업급여 제외)	2011
스웨덴	(수지) 재정수지 흑자 GDP 1%	2000
스위스	(수지) 구조적 예산 균형	2003
영국	(수지) 5년 단위 중기계획의 3년차 연도에 균형 (채무) 순채무 비율 5개년도 종료시까지 감소	2021
미국	(지출) 2012~30년 기간 동안 의무지출 한도 명시	2010
캐나다	(수지) 1998~2005년간 재정수지 균형	1998
〈非 OECD 회원국〉		
안도라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leq$ GDP 1.0% (채무) 중앙정부채무 $\leq$ GDP 40%	2014
앤티가 바부다	(수입) GDP 대비 세수 $\geq$ 18% (채무) 공공채무 $\leq$ GDP 70%	2021
아르헨티나	(지출) 기초재정지출증가율 $\leq$ 명목 GDP 증가율, 기초경상지출 증가율 $\leq$ CPI	2018
아르메니아	(수지) 재정적자 $\leq$ GDP 7.5% (채무) 중앙정부채무 $\leq$ GDP 60%	02/08
아제르바이잔	(수지) 석유수입 제외 GDP 대비 석유수입 제외수지가 전년대비 개선	2019
바하마제도	(채무) 2030/31까지 채무 $\leq$ GDP 50%	2018
베네투	(수지) 재정적자 $\leq$ GDP 3% (채무) 공공채무 $\leq$ GDP 70%	2015
보츠와나	(채무) 대내외 채무한도 각각 GDP 20%(총 40%)	2005
브라질	(수지) 신규차입 규모 $\leq$ 공공투자 규모	1998
불가리아	(지출) 지출한도 $\leq$ GDP 40% (채무) 미지급정부채무 $\leq$ GDP 60%	12/03
부키나파소	(수지) 재정적자 $\leq$ GDP 3% (채무) 공공채무 $\leq$ GDP 70%	2015
부룬디	(채무) 공공채무 $\leq$ GDP 50.0%	2013
카보 베르데	(수지) 차입 상한 $\leq$ GDP 3% (채무) 국가채무 $\leq$ GDP 60%	1998
캄보디아	(채무) 공공채무 $\leq$ GDP 55%	2018

국가명	주요 준칙 내용	시행시기
카메룬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채무) 공공채무 ≤ GDP 70%	17/0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2017
차드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2017
콩고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채무) 공공채무 ≤ GDP 70%	17/02
코트디부아르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크로아티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지출) 수지균형시까지 연간 GDP 1% 지출 삭감	2012
키프로스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0.5%	2014
도미니카	(수지) 2026년까지 GDP 2% 흑자 (채무) 2035년까지 GDP의 60% 달성	2021
에콰도르	(수지) 균형예산 달성 시까지 매년 비석유 부문 적자 0.2% 감축	2020
적도기니	(수지) 구조적수지적자 ≤ GDP 1.5%	2017
가봉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2017
조지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채무 ≤ GDP 60%	2013
그레나다	(수지) 기초재정수지 적자 ≤ GDP 3.5% (채무) 정부채무 ≤ GDP 55%	2015
기니비사우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홍콩	(수지) 균형재정 달성, 재정적자 방지	1997
인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중앙정부채무 ≤ GDP 40%	2018
인도네시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일반정부채무 ≤ GDP 60%	67/04
이란	(채무) 공공채무 ≤ GDP 40%	2016
자메이카	(수지) 기초재정수지 적자 ≤ GDP 7.0%	2017
카자흐스탄	(수지) 2018년부터 재정적자 ≤ GDP 1.0% (채무) 정부채무 ≤ GDP 27%	2016
케냐	(채무) 정부채무 ≤ GDP 50%	2019
코소보	(수지) 재정적자 ≤ GDP 2.0%	2015
라이베리아	(채무) 공공채무 ≤ GDP 60%	2009
말레이시아	(채무) 2022년까지 정부채무 ≤ GDP 65%	2020
몰디브	(수지) 재정적자 ≤ GDP 3.5% (채무) 정부채무 ≤ GDP 60%	2013
말리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몰타	(채무) 정부채무 ≤ GDP 60%	2014
모리셔스	(채무) 2025년까지 정부채무 ≤ GDP 80%, 2030년까지 정부채무 ≤ GDP 70%	2020
몽골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2% (채무) 정부채무 ≤ GDP 40%	2021
몬테네그로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일반정부채무 ≤ GDP 60%	2014
나미비아	(채무) 정부채무 ≤ GDP 35%	2001
니제르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나이지리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0%	2007
파키스탄	(수지) 연방 재정적자 ≤ GDP 3.5%	2016
파나마	(수지) 2022년에 재정적자 ≤ GDP 4.0% 2024에 재정적자 ≤ GDP 2.0%	2020
파라과이	(수지) 중앙정부 재정적자 ≤ GDP 1.5%, 3년 평균 재정적자 ≤ GDP 1.0%	2015
페루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	2013
루마니아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 GDP 1.0% (채무) 일반정부 채무 ≤ GDP 60.0%	2013
러시아	(수지) 기준 유가(\$40)에서 재정수지 균형	2019
르완다	(수지) 중앙 정부 재정적자 5년 평균 ≤ GDP 5.5%	2019
세네갈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세르비아	(채무) 일반정부채무 ≤ GDP 45%	2011
싱가포르	(수지) 정부 임기 동안 예산 균형	1995
남수단	(수지) 재정적자 ≤ GDP 3.0% (채무) 공공채무 ≤ GDP 50.0%	2013
스리랑카	(수지) 다년도 기준 재정적자 목표치 설정	2013
세인트키츠네비스	(채무) 2035년까지 채무 ≤ GDP 60.0%	2021
세인트루시아	(채무) 2035년까지 채무 ≤ GDP 60.0%	202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출) 정부 임금 및 총 지출의 GDP대비 비중 설정	2022
탄자니아	(지출) 정부 지출 ≤ GDP 40.0%,	2015
태국	(채무) 공공채무 ≤ GDP 70.0%	2018
동티모르	(수입) 예산 목적 석유기금 인출 ≤ 3.0%	2005
토고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투르크메니스탄	(수지) 중앙정부 균형수지	2015
우간다	(수지) 재정적자 ≤ GDP 3.0%	2016
우루과이	(지출) 중앙 정부 및 사회보장 지출 실질 증가율 ≤ 추정 잠재 성장률	2020
베트남	(수지) 2021~2025 평균재정수지적자 ≤ GDP 3.7%	2021